

국민 취업지원제도



■ 지원대상

I 유형	II 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•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①가구 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•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	• (저소득층)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• (청년) 18세 ~ 34세 • (중장년)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
- **(소득·재산)**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 -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 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- **(취업경험)**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 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 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■ 지원내용

구분		I 유형(40만명)			II 유형(19만명)			
		요건심사형	선발형		저소득층 등		청년	중장년
			청년	비경험	저소득층	특정계층		
지원내용 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	취업지원서비스	●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						
	소 득 지 원	구직촉진수당	● 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× 6개월)		x			
		취업활동비용	x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			
지원기간		● 12개월 (6개월 연장가능)					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		● 생계급여수급자 ● 실업급여 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●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						

○ 특정계층

-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(부)·한부모 ⑫ 니트(NET)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

◆ 신청·접수

온라인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
오프라인 영일고용센터 2층 국민취업지원팀 ☎ (국번없이) 1350

◆ 문의상담

☎ (033) 371-6255~6



국민취업지원제도에
대한 자세한 내용은
홈페이지에서
확인해주세요!